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02

발의연월일: 2021. 5. 10.

발 의 자:윤한홍·권성동·성일종

양금희 • 유경준 • 유상범

이명수 • 이 용 • 지성호

태영호 · 한무경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의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8%로 급등하여 재산세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현행 법률에서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의 재산세율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인하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임.

이에 본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특례의 적용대상을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9억원 이하인 주택까지 확대하고 공시가격과 재산세율을 연동하여 공시가격이 10%를 초과하여 급격하게 오르게 될경우 추가로 인하된 재산세율이 적용되도록 할 뿐 아니라 특례세율의일몰기한을 폐지하여 공시가격에 따른 재산세 급증의 충격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 등).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2제1항 중 "6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를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3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경우에는 제1항"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시가표준액이 직전 연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46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7,6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0.94
1어타하다의 ㅊ그나 2어의 이상	112,2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1
3억원 초과	398,7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35

제112조제1항제1호 중 "제111조의2제1항"을 "제111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13조제2항 전단 중 "제111조의2제1항"을 "제111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	주택 세율 특례) ①
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	
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	
준액이 <u>6억원 이하인 주택에</u>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
<u>한정한다</u>)에 대해서는 다음의	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3조에
세율을 적용한다.	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
<u><신 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시가표준액이 직전 연
	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
	택에 대해서 다음의 세율을 적
	<u>용한다.</u>
	과세표준 세 율
	<u>6천만원 이하</u> <u>1,000분의 0.46</u>
	6천만원 초과 27,600원+6천만원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u>이하</u> 1,000분의 0.94
	1억5천만원 112,200원+1억5천만
	<u>초과 3억원</u> <u>원 초과금액의</u>
	<u>이하 1,000분의 1.91</u>
	<u> 398,700원+3억원</u>
	<u> 3억원 초과</u> <u>초과금액의</u>
	<u>1,000분의 3.35</u>

- ② (생략)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 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 액이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u>경우에는 제1항</u>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택이 제1항 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 규정(같은 법제92조의2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둘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 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u> </u>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u></u>
및 제2항 및 제2항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
세112조(세신세 조시시크단)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수있다.

-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
 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 출한 세액
- 2. (생략)
- ② ③ (생 략)

제113조(세율적용) ① (생 략)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 별로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 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 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 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 정법률 부칙

<u>,</u>
1
제111조의2
제1항 및 제2항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3조(세율적용) ① (현행과 같
<u> </u>
②
<u>제111</u> 조의2제1항 및 제2
<u> ক</u> ্টী
<u>.</u>
③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

정법률 부칙

제2조(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 <삭 제> 세 세율 특례의 유효기간) 제1 11조의2, 제112조 및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 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